

수출현안 · 수입제도 모니터링(대만 8월분)

I

수입제도 변경사항 / 수출현안

□ <공고> [식품알레르기표기규정(食品過敏原標示規定)]

- 공고 기관 : 대만 위생복지부 식품약품관리서 (衛生福利部 食品藥物管理署)
- 공고 및 시행 일자 : 2018년 8월 21일 / 2020년 7월 1일
- 기존안 폐지 공고 관련
 - 2015년 7월 1일부터 실시된 (2014년 3월 7일 발표, 부수작자제1031300217호)를 폐지하고, 수정 규정 발표
 - 폐지 사유 : 식품알레르기 표기 강화 및 알레르기 항원 분류 추가 기재 (제 6번~11번 추가)
- 신규 규정 공고내용 :
 1. 본 규정은 「식품안전위생관리법」 제22조 제1항 제10호 규정에 의함
 2. 시판 포장식품에 아래와 같은 특수 알레르기 체질자에 대한 알레르기 항원이 포함되었을 경우 제품 포장 상 알레르기 항원 내용물 및 경고 문구를 표기해야 함
 - (1) 갑각류 및 그 제품
 - (2) 망고 및 그 제품
 - (3) 땅콩 및 그 제품
 - (4) 우유, 양유 및 그 제품. 단 우유나 양유로 제조된 락티톨(乳糖醇)은 본 규정의 제한을 받지 않음
 - (5) 알류 및 그 제품
 - (6) 견과류 및 그 제품
 - (7) 깨 및 그 제품
 - (8) 글루텐 곡물 및 그 제품. 단 곡물로 제조된 포도당 (葡萄糖漿), Maltodextrin(麥芽糊精) 및 그 주류 제품은 본 규정의 제한을 받지 않음
 - (9) 대두 및 그 제품. 단 정제과정 및 정화 과정을 거친 대두유(지방), 혼합형식의 토코페롤 (tocopherols) 및 그 제품의 유도체, 또는 피토스테롤(Phytosterol), 피토스테롤 에스터 등은 본 규정의 제한을 받지 않음
 - (10) 어류 및 그 제품. 단 어류로 제조된 젤라틴을 비타민 또는 카로티노이드 (carotenoid)에 사용하거나 주류를 정화하기 위해 사용했을 시에는 본 규정의 제한을 받지 않음
 - (11) 아황산염류가 사용된 제품 등. 그 최종 제품의 이산화황 잔류량이 매 kg 당 10mg 이상이 측정된 제품
 3. 상기 사항에 대한 경고문구 표기 정보(아래 두 가지 방법 중 한 가지 선택 기재)
 - (1) 「본 제품은 ○○ 포함», 「본 제품은 ○○ 포함되어 있어, 그 알레르기 체질자가 섭취 시 부적합 함」 또는 동일 의미의 글자를 표기해야 함
 - (2) 품명 내 「○○」성분 기재, 이 방식 표기 제품은 알레르기 유발 내용물이 품명 내 전부 기재 되어야 함

<시사점>

- 알레르기 항원을 포함한 식품 또는 제품일 경우 상기 표기 사항을 숙지하여 관련 한국 식품 對대만 진출 시 각별한 주의가 필요 함
- * 자료원 : 대만위생복지부 식품약품관리서. 2018년 8월 21일 공고

II

품목별 통관 일반사항 / 주의사항

□ [예고수정] 식품첨가물에 대한 식품첨가물 사용범위 및 표준규격 제4조 제2조 표1 수정안

- 공고기관 : 대만 위생복지부 식품약품관리서(衛生福利部 食品藥物管理署)
- 수정 공고 일자 : 2018년 9월 11일
- 시행일자 : 제4조 공고일부터 시행, 제2조 표 1은 수정공고 일자로부터 6개월 이후 시행
- 공고내용 :
 - 「식품안전위생관리법」 제18조 제1항 규정에 의거하여, 「식품첨가물사용범위 및 제한량 및 규격 표준(食品添加物使用範圍及限量暨規格標準)」 제4조 및 제2조 표 1 신규규정 추가
 - 식품 첨가물 Pectins(펙틴), Guar gum(구아검), Carob bean gum(캐롭검) : Locust bean gum(로커스트콩검), α -cyclodextrin, γ -cyclodextrin, β -cyclodextrin에 대한 사용 범위 및 표준 제한
 - 현 조항에 없는 신규 추가 규정 임

제12류 점증제			제15류 재제(운반체)		
품명	사용범위 및 제한	비고	품명	사용범위 및 제한	비고
Pectins	각종 식품에 실제 필요한 적당량 사용가능	영유아 캔식품에 사용금지	β -cyclodextrin	껌 및 풍선껌에 20g/kg 이하 사용가능	
Guar gum	각종 식품에 실제 필요한 적당량 사용가능			인스턴트 면류에 1.0g/kg 이하 사용 가능	
Carob bean gum; locust bean gum	각종 식품에 실제 필요한 적당량 사용가능			음료제품에 0.50g/kg 이하 사용 가능	
α -cyclodextrin	각종 식품에 실제 필요한 적당량 사용가능		제 16류 유화제		
γ -cyclodextrin	각종 식품에 실제 필요한 적당량 사용가능		품명	사용범위	사용금지
			Pectins	각종 식품에 실제 필요한 적당량 사용가능	영 유 아 캔식품에 사용금지
			Guar gum	각종 식품에 실제 필요한 적당량 사용가능	
			Carob bean gum; locust bean gum	각종 식품에 실제 필요한 적당량 사용가능	

<시사점>

- 한국식품 수출 시 해당 상품에 관해 첨가 가능여부 및 제한량 등 식품첨가물의 신규 추가 성분에 대한 규정을 사전 숙지하여 대만 수입 시 문제가 되지 않도록 상기와 같은 내용 참고 및 주의가 필요함

* 자료원 : 대만위생복지부 식품약물관리서. 2018년 9월 11일 공고